

# 부천시 미니태양광 신청 방법

## 1. 접수 방법

- 서류 접수(원본서류 접수 원칙)
- 접수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-68(원흥동) 2층 솔라테라스 사무실, (우편번호) 10552

## 2. 신청서 작성

- 첨부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.  
(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설치용량, 서명)
-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(세입자인 경우) 소유자 동의서는 필수
  - ↳ 소유자 동의서에 '소유자의 인감 날인' 및 '소유자 인감증명서' 제출 필요
  - ↳ 소유자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시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제출 필요
-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

## 3.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

- 각 서류 하단의 인/서명 란은 반드시 서명이나 도장 날인(필수)
- 작성이 어려운란은 공란으로 기재
- 수원시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베란다 난간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.

## 4. 상품별 제품 가격, 보조금, 자부담금(원)

상품명	제품가격	보조금	자부담금
거치형 445W	9500,000원	760,000원	190,000원
거치형 890W	1,900,000원	1,520,000원	380,000원
앵커형 445W	1,000,000원	800,000원	200,000원
앵커형 890W	2,000,000원	1,600,000원	400,000원

[별지 제2호 서식]

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신청서				
접수순번	공무원 기재란		접수일시	공무원 기재란
신청인			연락처	
주소	(동 / 호수)			
주택형태	공동주택( ), 단독주택( )		설치용량	W
설치장소	난간( ), 옥상( ), 기타( )		전월전기사용량	kWh
설치여건	방위각( ) 음영여부( )		난간의 안정성	
설치기간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 (사업기간 : 일)			
설치제품	거치형 / 앵커형		W (참여기업명 : 솔라테라스(주))	
설치비	총사업비	도비 보조금	시·군비 보조금	자부담
	원	원	원	원
신청자 준수사항			(확인 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<input type="checkbox"/>	
위와 같이 경기도 및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	
2025년 월 일				
신청인		또는 인)		
참여기업		솔라테라스(주)		
부천시장 귀하				
경기도지사 귀하				
첨부서류				
1.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[별지 2-1]				
2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[별지 2-2]				
3. 관리주체 동의서(공동주택의 경우) [별지 2-3]				
4. 소유자 동의서 [별지 2-4]				
5. 전세대 소유자 동의서(연립·다세대주택 옥상 설치 경우) [별지 2-5]				
6.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[별지 2-6]				
7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(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첨부)				
8. 건축물대장 (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첨부)				

##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계약서

<b>계 약 당사자</b>	신청인	생년월일				
		주 소				
		연 락 처		E-MAIL		
	시공 업체	솔라테라스(주)	대표자	최 정 동	사업자등록번호	896-88-00447
			주 소		(10552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-68	
			연 락 처	1566-3221	E-MAIL	solarterrace@naver.com
<b>계 약 내 용</b>	분 야	미니태양광	설비타입		설치용량	W
	설치장소			도 지원금	일금	원
	설치기간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		시·군지원금	일금	원
	사업비 총액	일금	원			
	계약금	일금	원	신청인자부담	일금	원
<b>본 문 조 항</b>	제1조 (계약금) 필요한 경우 "신청인"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.					
	제2조 (신청인 부담비용) ① "신청인"은 "참여기업"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, "참여기업"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② "참여기업"은 "신청인"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, "신청인"은 "참여기업"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·제출에 적극 협조한다.					
	제3조 (계약의 해약) ① "신청인"과 "참여기업"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② "신청인"과 "참여기업"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1.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.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"참여기업"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"신청인"에게 즉시 반환한다.					
	제4조 (보관)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"신청인", "참여기업"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					
<b>특 약 조 항</b>	제1조 (이행보증 및 하자보증)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"참여기업"은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. ② "신청인"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, "참여기업"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					
	제2조 (사용자 교육) "참여기업"은 "신청인"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					
	제3조 (지체상금율) "참여기업"이 "신청인"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.					
	제4조 (계약효력) 본 계약서는 경기도 및 부천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.					
2025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			
(신청자명)				(서명 또는 인)		
(참여기업)				솔라테라스(주)		



##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### <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>

○ (수집항목)

- 신청자 :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주소, 참여기업, 설치용량, 발전량

○ (이용방법) 사업수행(계획수립, 집행 등),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, 성과분석, 정책개발 연구자료, 만족도 조사, 홍보자료 등

수집항목	○ (신 청 자)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참여기업, 설치용량, 발전량 등	확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사용목적	○ 지원기준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등 ○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○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·통계자료 활용 ○ 사업 홍보 활용(태양광 발전설비 사진 등) ○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에 대한 자료제공 ○ 태풍, 호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내문자 발송	확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부천시(경기도)에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5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 청 자
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-3호 서식]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작성

## 관리주체 동의서

공동주택명 :

연락처 :

신청인 :

연락처 :

세부주소 :

(동 / 호수)

참여기업명 :

솔라테라스(주)

『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(관리규약의 준칙) 제2항의 5호』 및  
『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의 4호』에  
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「2025년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」  
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( 공동주택명 ) 관리소장 (직인)

[별지 제2-4호 서식]

①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작성 ②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소유주가 작성

## 소유자 동의서

소유자		연락처	
설치주소	(동 / 호수)		
참여기업명	솔라테라스(주)		

‘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’에 따라 해당 소유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소유자 :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-5호 서식] 공동주택 옥상에 앵커형으로 설치하는 경우

## 전체세대 소유자 동의서

신청자	
설치 주소	
참여기업명	슬라테라스(주)

‘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’에 따라 해당 건물 옥상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옥상 설치로 인해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에 대하여 부천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, 당사자 간 상호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호	소유자	:	(인)	호	소유자	:	(인)
호	소유자	:	(인)	호	소유자	:	(인)
호	소유자	:	(인)	호	소유자	:	(인)
호	소유자	:	(인)	호	소유자	:	(인)

##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

-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및 부천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.
  -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.
-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-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 -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 - 관련법,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.
  - 단,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,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.

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(신청인, 참여업체)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참여기업    솔라테라스(주)

